#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02 발의연월일: 2023. 1. 30.

발 의 자:류성걸·주호영·박덕흠

金炳旭・강민국・김상훈

송언석 · 윤영석 · 임병헌

정희용 • 박대출 • 안병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 납세의무자와는 다르게 과세하고 있는 바,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과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여타 법인 납세의무자와는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

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 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2항 각 호"를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단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제10조 단서 중 "제9조제2항 각 호"를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	
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	
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	
에는 영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2. <u>제9조제2항제2호 각 목</u>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생 략)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	②
인으로 보는 <u>단체(「공공주택특</u>	<u>단체</u>
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으로 한다.

-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 천분의 27
-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 ③ ~ ⑨ (생 략)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 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 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ul> <li>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등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li> <li>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li> <li>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li> <li>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li> <li>③ ~ ⑨ (현행과 같음)</li> </ul>	
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 ⑨ (현행과 같음)	1.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
<ul> <li>에 따른 세율</li> <li>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li> <li>에 따른 세율</li> <li>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li> <li>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li> <li>③ ~ ⑨ (현행과 같음)</li> </ul>	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ul> <li>에 따른 세율</li> <li>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li> <li>에 따른 세율</li> <li>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li> <li>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li> <li>③ ~ ⑨ (현행과 같음)</li> </ul>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에 따른 세율
우: 1천분의 27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③ ~ ⑨ (현행과 같음)	
우: 1천분의 <u>50</u> ③ ~ ⑨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1102(M구임의 강안)	
	세10조(세구림의 강안)

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 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 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 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